

의안번호	2214479
의 퇴 인	나경원 의원
회 답 일	2025. 11. 28.
추 계 번호	25G6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총 18조 9,651억원(연평균 1조 8,9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 항목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추계를 할 수 없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6~2035년

(단위: 억원)

	'26	'27	'28	'29	'30~ '35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조)		-24,690	-25,446	-26,261		-76,397	-25,46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7조의4)		-34	-35	-37		-106	-35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8조의3)		-289	-289	-289		-868	-289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 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안 제13조)		-123	-123	-123		-369	-123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 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586	-586	-586		-1,758	-586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 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3)	추 정 곤 란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 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 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4)	추 정 곤 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 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60	-60	-60		-180	-6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 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	추 정 곤 란						

	'26	'27	'28	'29	'30~ '35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		-2,027	-2,027	-2,027		-6,081	-2,02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4)		-158	-164	-170		-492	-16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1.3	-1.3	-1.3		-3.8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5.5	-5.5	-5.5		-16.5	-5.5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제1항)		-143	-287	-430	-1,722	-2,582	-287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의2제1항)		-63	-126	-188	-753	-1,130	-12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	-102	-102	-102			-306	-10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3)	-20	-20	-20			-60	-20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기한 연장(안 제71조)	-630	-630	-630			-1,890	-6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 중소기업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8제1항)		-1	-1	-1		-3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33	-33	-34			-100	-33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219	-394	-394	-175		-1,182	-296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안 제89조의3)	-3,595	-6,472	-6,472	-2,876		-19,415	-4,85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제1항)		-65	-129	-194	-775	-1,163	-129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4,141	-25,137	-26,175			-75,454	-25,151

	'26	'27	'28	'29	'30~ '35	누적	연평균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11	-4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28	-28	-28			-84	-28
합 계	-28,772	-61,066	-63,139	-33,424	-3,250	-189,651	-18,965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비용추계서의 전체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2026~2035년 평균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	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 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3	안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 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4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 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5	안 제13조의2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 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6	안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 장비전문기업 등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7	안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4조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9	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0	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소득공제율: <table><tr><th>투자방식</th><th>출자·투자금액</th><th>공제율</th></tr><tr><td>제1호·제2호·제5호 (간접투자)</td><td>전체</td><td>10%</td></tr><tr><td rowspan="3">제3호·제4호·제6호 (직접투자)</td><td>3천만원 이하</td><td>100%</td></tr><tr><td>5천만원 이하</td><td>70%</td></tr><tr><td>5천만원 초과</td><td>30%</td></tr></table>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방식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제1호·제2호·제5호 (간접투자)	전체	10%	제3호·제4호·제6호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투자방식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제1호·제2호·제5호 (간접투자)	전체	10%														
제3호·제4호·제6호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1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2	안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수혜내용: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3	안 제61조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수혜내용: 본사·주사무소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4	안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율 ① 수도권 내(중소기업한정),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7년 100% + 3년 50%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율 ①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7년 100% + 3년 50%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16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7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8	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19	안 제85조의8제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수혜내용: (내국법인)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임금산입 (거주자)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납부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0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개정안) 농어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6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9년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22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2026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2029년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23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율: 5년간 100% + 2년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4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5	안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12호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6	안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제9호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	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3	안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4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	안 제13조의2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	
6	안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 최근 5년간 동 조항의 특례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특례실적 발생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7	안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최근 5년간 동 조항의 비과세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양도차익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8	안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	
9	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및 면제금액 실적 등이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10	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	
1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2	안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3	안 제61조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4	안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15	안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16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8	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19	안 제85조의8제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21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22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23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4	안 제10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25	안 제106조 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6	안 제106조 제2항제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
 - 증여세의 경우, 연도별 증여행위의 감면은 해당연도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
 - 증여행위의 신고기한은 증여 이후 3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
- (안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2025.10.)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관계식을 도출한 후,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을 통해 향후 소득세 감면액 추계
 - * 2016~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과 종합소득세의 상관계수: 0.844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최근 5년('21~'25)간 연평균 증가율(2.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법인세 증감과 관계없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공제 대상인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추세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동 조항에 따른 지급기한 60일 이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2024년간 연평균 3.4% 증가

- 단, 2025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증가율(2.7%)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안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9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은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모는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6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13조의2)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
 -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감면실적(잠정치)을 바탕으로, 2026년 공제액은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하며, 2027년 이후 공제액은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
 - 향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
 -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의 2025년 감면실적(잠정치)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2025.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단, 근로소득의 발생시점과 신고시점의 시차를 고려하여 t년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t+1년 세액공제 증가에 적용된다고 가정
- (안 제60조제2항)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2025년 실적(매년 1.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대도시 밖 공장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평균 감면실적은 최근 5년('21~'25년) 중 특이치인 2021년(0.1억원)을 제외하면 1.3억원 수준
- (안 제61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4년(2022~2025년)의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22~2025년(잠정) 법인세 감면액 평균: 5.5억원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안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 (안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20억원)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536억원에서 2021년 773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4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안 제85조의8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2025년 실적(매년 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최근 5년('21~'25년) 중 2021년(0.1억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
 - 다만, 소득세는 매년 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향후 감면실적은 법인세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 2025년의 동 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5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
-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2025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2025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 (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387.8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387.8억 원 × 1/6 = 약 65억 원
 -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6으로 나누어 환산
 - 다만,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2026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위기지역이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 (안 제105조)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 각각의 최근(2019~2023년) 추세를 반영

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

-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징수 기준)은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신고 기준)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

□ (안 제106조)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5조)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최근 5년간 해당 항목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한 벤처기업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및 면제금액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3.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본점 소재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우대,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도입,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변화 존재

[표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요 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2016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10% 확대 적용 ※ 10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감면대상 확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임업 추가
2017	- 감면한도 설정: 1억원 - (500만원 × 고용 감소인원)
2020	- 감면대상 확대: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추가
2022	-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감면 삭제 - 알뜰주유소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 한시적 도입(2022 과세연도)

-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본점 소재지,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5~30%의 감면율을 적용
 - 단, 장수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의 10%(1.1배) 우대 적용

[표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단위: %)

구분		도소매업 및 의료업	그 외 업종
수도권	소기업	10	20
	중기업	감면 배제	
비수도권	소기업	10	30
	중기업	5	15

□ (특례실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2024년 2조 3,636억원에서 2026년 2조 4,00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 2026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망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조 3,373억원, 법인세는 1조 634억원 수준

[표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감면실적	23,489	25,336	23,636	23,379	24,007
- 소득세	12,632	13,738	13,130	12,975	13,373
- 법인세	10,858	11,598	10,506	10,404	10,634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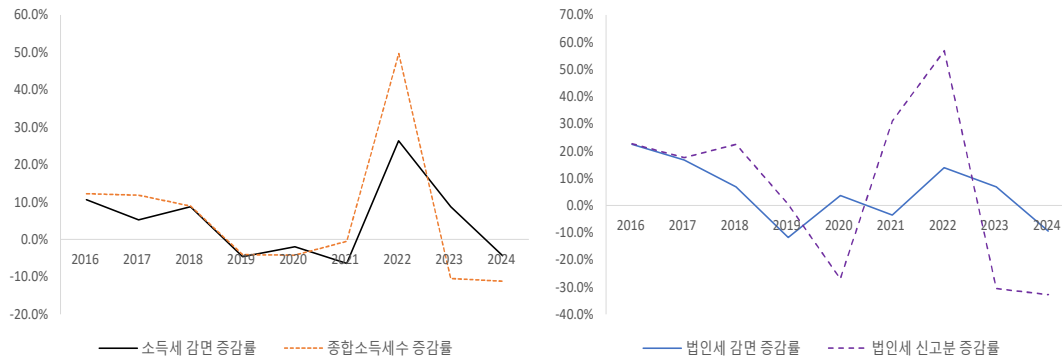
□ (감면실적 증감률과 세수증감률간 상관관계) 세목별 감면실적 중 소득세 감면실적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2016~2024년간 소득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간 상관계수는 0.844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동 기간 법인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간 상관계수는 0.454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

- 2020년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국면 하강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데 반해, 동 기간 법인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대체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수와 감면실적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법인세 감면실적과 법인세 신고분간 상관계수: ('16~'19년) 0.871, ('20~'24년) 0.458

[그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증감률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
 <소득세> <법인세>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6~2025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의 관계식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하면, 종합소득세수 1% 증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세 감면액은 0.475% 증가

-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의 증감률, 설명변수는 종합소득세수 증감률로 구성
 - 추정결과,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

$$\begin{aligned} \text{※ } \% \Delta \text{감면액}_t &= 0.013 + 0.475*** \% \Delta \text{종합소득세수}_t + e_t \\ &\quad (0.690) \quad (4.996) \end{aligned}$$

단,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에 대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종합소득세수 전망치(2025.10.)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을 추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3,821억원에서 2029년 1조 4,9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 추정

(단위: %, 억원)

	2027	2028	2029
소득세 세수효과 추정치	13,821	14,338	14,906
(증감률 전망)	3.3	3.7	4.0

□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법인세 감면액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2.2%)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869억원에서 2029년 1조 1,35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법인세 세수효과 추정치	10,869	11,109	11,354

(3) 추계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2조 4,690억원, 2029년 2조 6,261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7조 6,397억원(연평균 2조 5,4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7조)	-24,690	-25,446	-26,261	-76,397	-25,466
- 소득세	-13,821	-14,338	-14,906	-43,065	-14,355
- 법인세	-10,869	-11,109	-11,354	-33,331	-11,110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조의4)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

- 동 제도의 공제대상,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
 - 공제대상: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 단,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함
 - 공제율: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에 따라 0.15~0.5%
 - ※ 지급기한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동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

[표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의4)의 주요 연혁

시행연도	주요 개정내용
2016년	· 제도 도입 - 공제대상: 상생결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15~60일: 0.1%
2018년	· 공제대상 확대: 중소기업 → 중소기업
2022년	· 공제율 세분화 및 인상: - (기존)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15~60일: 0.1% → (개정) 지급기한 15일 이내 0.5%, 15~30일 0.3%, 31~60일: 0.15% · 공제요건 완화 -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 비중 관련 요건 삭제

□ (감면실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8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잠정) 32억원으로 감소
 - 실적의 대부분은 법인세 공제실적이며, 소득세 공제실적은 연평균 1억원 수준

[표 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공제실적	8	12	21	39	40	32
－ 소득세	1	1	1	1	1	1
－ 법인세	7	11	20	38	39	31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실적에서 최근 3년(2022~2024년)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연평균 증가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지급기한 60일 이내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2022년 17.8조원에서 2024년 18.4조원으로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

[표 10]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 지급기한 60일 이내, 2022~2024년

(단위: 조원, %)

지급금액 구분	2022	2023	2024
지급기한 60일 이내	17.8 (7.3)	17.9 (0.4)	18.4 (2.7)
－ 15일 이내	6.5	7.0	7.0
－ 16~30일	2.0	2.0	2.0
－ 31~60일	9.2	8.8	9.3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간 상생결제 지급금액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3.4%)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11] 개정안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조원)

구분	2027	2028	2029
공제액 추정치	34	35	37

(3) 추계결과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4억 원, 2029년 37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06억 원 (연평균 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7조의4)	-34	-35	-37	-106	-35

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조의3)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제도의 공제대상,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
 - 공제대상: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3.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4.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공제율: 1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동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표 1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안 제8조의3제1항)의 주요 연혁

시행연도	주요 개정내용
2011년	· 제도 도입 － 공제대상: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공제율: 7%
2017년	· 공제율 확대: 7% → 10%
2020년	· 공제대상 확대: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
2022년	· 공제대상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

□ (감면실적)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294억원으로 감소

[표 1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년)
공제실적	202	212	329	408	294	28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공제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법인세 공제액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인 289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15]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세수 감소효과	289	289	289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89억 원, 2029년 289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868억 원(연평균 28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조의3)	-289	-289	-289	-868	-289

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3조)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2020년 이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6년 12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17]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 2020~2026년(전망)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비과세 실적	24	41	120	205	65	120	123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연도별로 2026년 전망치(123억원)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에 출자한 주식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높아 2026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18]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과세 규모 전망: 2027~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비과세 전망	123	123	12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123억원, 2029년 123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369억원(연평균 1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3조)	-123	-123	-123	-369	-123

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3조의2)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
 - 출자(투자) 대상
 -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제세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28. 12. 31.
- (감면실적) 2020년 이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는 2020년 260억원에서 2022년 67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533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잠정) 566억원으로 증가

[표 20]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 2020~2025년(잠정)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공제실적	260	335	676	652	533	566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벤처투자 실적) 2020년 이후 국내 벤처투자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이후 t년도의 공제실적과 t-1년도의 벤처투자 실적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벤처투자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
 - 공제실적(t년도)과 벤처투자 실적(t-1년도)의 상관관계: 0.917

[표 21] 국내 벤처기업 투자 추이: 2020~2025년 상반기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전체	상반기
투자실적	80,962	159,371 (96.8)	124,706 (△21.8)	109,133 (△12.5)	54,856 (22.1)	119,457 (9.5)	56,780 (3.5)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2) 추계방법

- 2026년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2025년 상반기 벤처기업 투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 2027년 이후 세액공제는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22]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전망: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공제액 전망	566	586	586	586	586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586억원, 2029년 586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758억원(연평균 5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계	연평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3조의2)	-586	-586	-586	-1,758	-586

바.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4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자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공제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창업기획자 등에 출자한 투자자, 벤처투자조합 등
 - 공제내용: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조세지출 실적)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 2020년 212억원,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는 124억원, 2025년에는 60억원으로 감소

[표 24]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비과세 실적	19	212	317	124	23	53	6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잠정실적(60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큼에 따라 2025년 잠정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표 25]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과세 규모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비과세 전망	60	60	60

(3) 추계결과

-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60억원, 2029년 60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80억원(연평균 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계	연평균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4조)	-60	-60	-60	-180	-60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

(1) 조세지출 실적

□ 2025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7억원임

- 201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
 - 2022년 조세지출 실적은 전년 대비 66.0% 증가한 반면, 2024년은 전년대비 2.3% 감소

[표 2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잠정)
조세지출액	891	1,075	1,785	1,905	1,861	2,027
(증가율)	(50.3)	(20.7)	(66.0)	(6.7)	(-2.3)	(8.9)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액(2025년 전망치)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3) 추계 결과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2029년 동안 총 6,081억원(연평균 2,0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	-2,027	-2,027	-2,027	-6,081	-2,027

아.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4)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 공제율 상승 등 제도 개정이 존재

-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서, 임금이 직전 3년 평균 상승률보다 상승한 경우에 대한 기본공제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상승분에 대한 추가공제로 구분

- 공제대상: (기본공제)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면서, 임금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을 초과한 기업

(추가공제)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면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기업

- 공제금액: (기본공제) 직전 3년 연평균 임금상승 초과분의 10~20%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증가액의 10~20%

※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단,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 대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선택 가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동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등이 도입되었으며,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차등적인 상승 등 제도 개정이 이루어짐

[표 29]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29조의4)의 주요 연혁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2015년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면서, 상시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10%* 세액공제 * 공제율: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2016년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 증가분의 5~20%의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2017년	·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선택 도입 –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면서,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중소기업은 경우,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중 세액공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2018년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0% → 20%
2022년	· 공제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정 – 공제율: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4년 143억원 수준

- 동 조항의 감면실적은 2020년 109억원에서 2023년 22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143억원으로 감소

[표 3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액공제 실적	109	112	161	227	143
– 소득세	36	42	53	67	44
– 법인세	73	70	108	160	9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 (2025.10.)의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4년 공제실적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 (2025.10.)에 따라 연 3.2~3.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단, 근로소득의 귀속시점과 신고시점의 시차를 고려하여 t년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t+1년 세액공제 증가에 적용

[표 31]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세수 감소효과	158	164	170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t-1)	3.2	3.3	3.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158억 원, 2029년 170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492억 원(연평균 1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4)	-158	-164	-170	-492	-164

자. 대도시 밖 공장 이전법인의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 60조제2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대도시권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대

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 단, 위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제외함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5년(잠정치) 1억 원

[표 33] 대도시 밖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실적: 법인세, 2021~2025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법인세	0.1	1	2	1	1

주: p는 잠정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2021년 실적을 특이치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2022년~2025년(잠정)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세수효과 추계
 -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 감면액: 1.3억원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5년거치 5년 분할납부)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추계결과)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1.3억원, 2029년 1.3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3.8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1.3	-1.3	-1.3	-3.8	-1.3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 동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익금불산입하며, 이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

- 다만,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법인세	2	5	7	5	5

주: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최근 5년(2021~2025년) 중 2021년을 제외하고는 5~7억원 수준
이므로, 최근 4년(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5.5억원)이 향후에도 유
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2022~2025년(잠정) 법인세 감면액 평균: 5.5억원
- (추계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
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5.5억원, 2029년 5.5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6.5억원(연평균 5.5억원) 감소
할 것으로 추계

[표 3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 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5.5	-5.5	-5.5	-16.5	-5.5

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
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절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으나, 2021년부터 일반

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
- 감면내용: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감면
 - 수도권 내(중소기업한정),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7년 100% + 3년 50%
 -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단, 2022년까지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
- 감면실적이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이후 700억원대로 감소함

[표 37] 수도권 밖 공장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¹⁾
계	2,052	1,192	1,279	799	775
법인세	1,799	928	1,029	604	634
소득세	253	264	249	195	141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감면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액의 평균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법인세)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59억원* + 100% 감면액 118억원**
 - * 59억원 = 999억원 ÷ 17 (7년 × 2 + 3년)
 - ** 118억원 = 59억원 × 2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소득세)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13억원* + 100% 감면액 26억원**
 - * 13억원 = 220억원 ÷ 17 (7년 × 2 + 3년)
 - ** 26억원 = 13억원 × 2
-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¹⁾은 고려하지 않음

[표 38] 연도별 법인·소득세 감면 예상액: 2027~2035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26년 이전기업	-143	-143	-143	-143	-143
2027년 이전기업		-143	-143	-143	-143
2028년 이전기업			-143	-143	-143
계	-143	-287	-430	-430	-430

구분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기업	-72	-72				
2027년 이전기업	-143	-72	-72			
2028년 이전기업	-143	-143	-72	-72		
계	-359	-287	-143	-72	-2,582	-287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143억원, 2035년 72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2,582억원(연평균 2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최대 7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동안 적용되어, 2028년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표 3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제1항)	-143	-287	-430	-430	-430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제1항)	-359	-287	-143	-72	-2,582	-287

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 감면내용: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7년 100% + 3년 50%
 -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단,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 (감면실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5년(잠정치) 기준 501억원

- 2023년 이후 감면실적이 500억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표 40]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¹⁾
감면액	3,032	2,993	727	490	501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감면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2023년 이후 감면액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평균 감면실적: 534억원
 - 1년 단위 환산액: 50% 감면액 31억원* + 100% 감면액 63억원**
 - * 31억원 = 534억원 ÷ 17 (7년 × 2 + 3년)
 - ** 63억원 = 31억원 × 2
 -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5년 100% + 2

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3년 50% 또는 10년 100% + 2년 50%)²⁾은 고려하지 않음

[표 41]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 2027~2035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26년 이전법인	-63	-63	-63	-63	-63
2027년 이전법인		-63	-63	-63	-63
2028년 이전법인			-63	-63	-63
계	-63	-126	-188	-188	-188

구분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026년 이전법인	-31	-31				
2027년 이전법인	-63	-31	-31			
2028년 이전법인	-63	-63	-31	-31		
계	-157	-126	-63	-31	-1,130	-126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63억원, 2035년 31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1,130억원(연평균 1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최대 7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동안 적용되어, 2028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표 4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63	-126	-188	-188	-188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3조의2제1항)	-157	-126	-63	-31	-1,130	-126

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의 최근 연도별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4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23~'25년 연평균
감면실적	191	85	114	124	67	102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102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102억원, 2028년 102억원 등 3년간 총 306억원(연평균 1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2)	-102	-102	-102	-306	-102

하.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3)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개요)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 연도별 실적이 다소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45]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20~2025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3~'25년 연평균
감면실적	19	17	24	25	24	11	2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20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

(3) 추계결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0억원, 2028년 20억원 등 3년간 총 60억원(연평균 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0	-20	-20	-60	-20

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1조)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영농자녀등이 농지를 조기 이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
 - 동 제도의 증여인 및 수증인, 감면대상 자산, 감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표 47]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안 제71조)의 주요 내용

		감면요건
감면 요건	증여인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림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만㎡ 이내의 것,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7만㎡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t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이내의 것
	감면내용	증여세의 100%
누적 감면한도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0~2024년)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536억원에서 2021년 773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4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표 48] 최근 5년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연평균 (‘20~’24년)
감면실적	536	773	712	654	476	3,151	630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 630억원

[표 49]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6~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세수 감소효과	630	630	630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증여세는 2026년 630억원, 2028년 630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890억 원(연평균 6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증여세, 2026~2028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1조)	-630	-630	-630	-1,890	-630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 중소기업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안 제85조의8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 동 조항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 내국법인은 기존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익금불산입하며, 이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
-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5년(잠정치) 1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실적이 동일

[표 5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21~2025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법인세	0.1	1	1	1	1
소득세	0	0	0	0	0
합계	0.1	1	1	1	1

주: p는 잠정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2022년 이후 매년 감면실적이 1억원으로 동일하므로, 향후에도 감면액이 1억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세수효과 추계
-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5년거치 5년 분할납부)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다만, 소득세는 매년 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향후 감면실적은 법인세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3) 추계결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1억원, 2029년 1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3억원(연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 중소기업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85조의8제1항)	-1	-1	-1	-3	-1

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1) 조세지출 실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 35억 원, 2024년 63억 원 등으로 202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25년 42억 원 수준으로 감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임·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만기 3년 또는 5년)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

[표 5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¹⁾
조세감면액	35	37	43	63	42
(증감률)	(△12.5)	(5.7)	(16.2)	(46.5)	(△33.3)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5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

-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5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5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2025.9.)의 전망치 활용

[표 54]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고채 3년물	3.6	3.1	2.4	2.4	2.5	2.6	2.6
(증감률)	-	(△130%)	(△226%)	(0.0%)	(4.2%)	(4.0%)	(0.0%)

자료: 2024년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5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추계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3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00억원(연평균 33억원)으로 추계

[표 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안 제87조의2)	-33	-33	-34	-100	-33

러.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613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감추세 반복

[표 56]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¹⁾
조세감면액	491	611	868	594	613
(증감률)	(△0.2)	(24.4)	(42.1)	(△31.6)	(3.2)

주: 1)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2025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2025년) 수준(613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57]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5년 배당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613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44억원(=613억원/14%p)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2029년 4년간 총 1,182억원(연평균 296억원)으로 예상

[표 5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안 제88조의5)	-219	-394	-394	-175	-1,182
					연평균
					-296

며.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안 제89조의3)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1조 67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표 59]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¹⁾
조세감면액	3,269	3,113	6,226	9,765	10,067
(증감률)	(△25.2)	(△4.8)	(100.0)	(56.8)	(3.1)

주: 1)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2025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2025년) 수준(1조 67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60]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5년 이자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1조67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719억원(=1조67억원/14%p)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2029년 4년간 총 1조 9,415억원(연평균 4,854억원)으로 예상

[표 6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안 제89조의3)	-3,595	-6,472	-6,472	-2,876	-19,415	-4,854

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 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5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 (감면실적)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214억 원에서 2026년 452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표 62]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법인세	102	179	182	153	171	175
소득세	112	229	229	315	267	277
합계	214	408	411	468	438	452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창업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창업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387.8억원
- 신규 창업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387.8억 원 × 1/6 = 약 65억 원
 -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6으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창업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7년에 걸쳐 발생

- 다만,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2026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위기지역이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 세수효과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표 63]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6년 창업기업	64.6	64.6	64.6	64.6	64.6	32.3	32.3		
'27년 창업기업		64.6	64.6	64.6	64.6	64.6	32.3	32.3	
'28년 창업기업			64.6	64.6	64.6	64.6	64.6	32.3	32.3
감면 추계액	64.6	129.2	193.8	193.8	193.8	161.5	129.2	64.6	32.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65억 원, 2035년 32억 원 등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1,163억 원(연평균 12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7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까지 발생

[표 6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제1항)	-65	-129	-194	-194	-194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제1항)	-162	-129	-65	-32	-1,163	-129	

서.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5조 제1항)

- 동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 적용대상은 비료³⁾, 농약⁴⁾,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
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
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⁵⁾ 등임
-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7,475억원, 2024년 2조 2,266억원 등
으로 집계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

[표 65]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2018~2024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액	17,475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22,266

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축
산·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4년의 경우 96.2%,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8% 수준으로 집계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4) 「농약관리법」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 축산기계, 어업용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

[표 66]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2018~2024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축산·임업용(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96.7	96.2
어업용(제105조제1항제6호)	4.2	4.2	4.0	4.2	3.6	3.3	3.8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

○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

[표 67]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8~2024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16,738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21,416
어업용 기자재	737	794	715	784	794	772	850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2조 3,250억원 등으로 추정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6,738억원에서 2024년 2조 1,416억원으로 2018~2024년 7년간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68]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8~2024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16,738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21,416	4.2

-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연평균 4.2%)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69] 향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22,314	23,250	24,225	25,241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891억원 등으로 추정

-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737억원에서 2024년 850억원으로 2018~2024년 7년간 연평균 2.4%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70]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8~2024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737	794	715	784	794	772	850	2.4

-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연평균 2.4%)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71]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870	891	913	934

-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4,141억원, 2028년 2조 6,175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7조 5,454억원(연평균 2조 5,1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5조 6,364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조 9,090억원 감소 예상

[표 72]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 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4,141	-25,137	-26,175	-75,454	-25,151
- 국세(74.7%)	-18,033	-18,778	-19,553	-56,364	-18,788
- 지방소비세(25.3%)	-6,108	-6,360	-6,622	-19,090	-6,363

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 제1항)

- 동 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년 4억원 등으로, 최근(2022~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4억원 수준

[표 73]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연평균
조세지출액	4	4	3	4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4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11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22~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4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8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3억원 감소 예상

[표 7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11	-4
- 국세(74.7%)	-3	-3	-3	-8	-3
- 지방소비세(25.3%)	-1	-1	-1	-3	-1

저.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

-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20년 21억원, 2022년 46억원, 2025년(전망) 1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최근(2020~2025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28억원 수준

[표 75]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연평균
조세지출액	21	34	46	24	23	19	28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8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84억원(연평균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20~2025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28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62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1억원 감소 예상

[표 76]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28	-28	-28	-84	-28
- 국세(74.7%)	-21	-21	-21	-62	-21
- 지방소비세(25.3%)	-7	-7	-7	-21	-7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세제분석1과	박지원	
세제분석1과	이정훈	
세제분석1과	박성은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2과	박정환	
세제분석2과	신미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